

회보제49호



두엄누리

2007년7월30일

(사)한국부산물비료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 국제빌딩301호

»발행인:김상원/편집인:손이현 전화:02)522·4260~1 전송:522·4383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개선방안 설명회

◆ 현 운영체계

△농림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추진계획 시달

△농협중앙회: 시도, 시 군별 사업 배정, 공급업체 선정, 구매계약 체결, 품질관리 및 보조금 집행

△지역농협: 농가별 지원물량 배정 및 비료 공급

◆ 개선방안

가. 기본방향

△농업인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지원 추진

△정부지원과 지자체 지원이 연계되도록 예산집행체계 개편

△업체간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 건전한 비료산업 발전 유도

△공정규격 등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불량비료 생산업체가 존립하기 어려운 환경 조성

나. 세부 개선방안

1) 예산 편성기준 및 집행체계 개선

△전년도 농가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익년도 보조금 예산편성 하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구입한 비료에 대하여만 사용실적으로 인정

△보조금 예산 집행체계 개편

-국고와 지방비 등을 연계하

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의 집행기관을 현행“농협중앙회”에서 “지자체”로 변경

-지자체 농협 등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 국고를 포함한 총 지원 금액이 비료 구입비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2)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지방비로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생산업체에 대해서만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차별지원이 불가피 할 경우 업체의 생산능력범위 내에서만 가능토록 함

3) 품질관리 강화 및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페인트나 락카가 처리된 폐목재와 함께 MDF등 폐목분도 사용 불가능한 자재로 사용기준 강화

△비료공정규격 외에 제조 원료에 대하여도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제조원료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수불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며 명예 감시원제도를 도입하여 부정 불량비료 유통단속을 강화

△공급업체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필수시설을 구체화하고 업체별 생산능력을 파악하여 생산능력 초과 공급업체는 익년도 사업 참여 제한

△참여제한 대상에 업체는 물

론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도 제한 기준을 적용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08년 사업시행지침개정(10월)



지난 7월10일 농촌진흥청 대회의실에서 퇴비(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다. 농림부 친환경 농업 정책과 조원량 과장이 주최한 이 설명회에는 각 시도 비료담당공무원, 농협중앙회 시도 지역본부 비료 담당자 그리고 유기조합 관계자와 우리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농협중앙회에서
시. 도로 변경

유통제품에 대한 샘플 채취는 아직 어려워

대다수의 관계공무원은 비료 품질단속시 시료 채취에 대해 공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것보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비료담당 박명환 사무관은 “비료 생산업체가 한 지역만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납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경우 한 회사 제품이 중복되어 검사가 의뢰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 하였다. 제주도 담당 공

무원은 제주도는 다른 도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편이지만 지자체 지원으로 실시 될 경우 지방비를 묶어 지원하게 하고 그 하한선을 정하면 지원이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하였다. 이에 대해 농림부 조원량과장은 재정

하한선을 설정하여 지자체 자금을 묶어 지원 할 수 있도록하면 지원 확대효과 커

이 여유로운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 하한선 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강원도 담당 공무원도 우리도 다른 지방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편이나 하한선을 설정하여 지방비를 묶어 지원하게 하는 것이 지원 비료 공급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내년부터 보조금 예산 배정 및 자금교부는 농협에서 시.도로

우선은 농민이 농협을 통하여 지부담으로 사용해야 다음에 추기로 물량 배정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예산 배정 및 자금교부는 물론 물량배정도 시.도에서 하게 된다. 농가 사용실적과 연동하여 지원예산을 편성 전년도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A라는 군에 올해 물량재정이 10만포 이었는데 주문량이 20만포가 되었으면 우선 10만 포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재정하고 남지 10만 포를 농협을 통해 보조비 없는 일반 판매가로

구매하였을 때 그 다음해에 10만 포가 늘어난 20만 포를 배정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신청물량 중 보조 물량 외에는 금액의 차이로 인해 구매를 기피 할 수도 있고 일단 주문에 의해 납품된 제품에 대해 반품을 요구할 경우 납품업체와의 갈등이 생겨 날 수 있으면 이로 인해 주문량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일어나고 있다.

축분 퇴비 품평회

유기조합은 반대

우리 협회는 반대하지는 않으나 기준 설정 철저 요구

지난 9일 농림부 축산자원 순환과에서 이상철과장 주최로 가축분퇴비 품평회 추진계획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우리 협회와 유

기조합 그리고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축분퇴비 품평회는 2006년 6월 발표된 『가축분뇨를 활용

한 자연순환농업 추진 대책 방침』에 따른 것으로 10월이 행사 예정 월이다. 이날 회의에서 유기조합 관계자는 퇴비는 부산

물 비료로서 비료관리법에 의해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축산국 산하 기관인 축산자원순환과에서 실시하는 품평회는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또 축산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농업 추진 대책에 대해 모든 정책 방향이 액비위조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퇴비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 참석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우

리 협회 또한 그 동안 자원순환 농업 추진 대책에 대해서 축산농가가 활용하는 방법 중 80%가 퇴비화 방법이나 퇴비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퇴비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축산농가가 각기 형평에 맞는 처리 방법을 선택하여 효과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해양투기를 자재하고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 농업환경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업체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임은 확실하나 업체선정 기준이나 품질 평가기준이 매우 어렵고 복잡함으로 줄속으로 끝나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 좋은 행사기 되게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

1. 양질의 퇴, 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마. 가축분 퇴비 품평회 개최

□ 경종농가 알 권리를 충족하고 우수 퇴비 유통활성화 여건 마련

-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분 퇴비 품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업무 추진 ('06.10~)

- 위원회에서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제정하여 평가기준, 평가방법, 신청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

□ 가축분 퇴비 품평회 홍보 및 신청('07.1~4)

-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우수 퇴비 품평회 내용을 집중 홍보

- 농협중앙회 지정업체에 한해 신청자격을 부여

□ 우수제조업체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시료분석을 거쳐 선정 ('07.5~9)

- 우수제조업체에는 장관사를 수여하고 포상금 지급

- 농협중앙회에서는 자체 규정을 마련, 우수 업체 인증마크부여

2007년도 농업연수원 부산물비료 생산과정 교육 실시

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과 한국 부산물비료 협회로 나누어서 실시
강사도 교재도 모두 나누어서 실시

제1기:70명 부산물비료협회
회원사(7.11~13)

제2기:150명 유기조합
회원사(7.18~20)

제3기:58명 부산물비료협회,
유기조합, 개인 및 공무원

올해도 농업연수원에서 부산물비료생산과정 교육이 있었다. 2005년 까지는 소속단체와는 상관없이 혼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소속단체별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올해는 강사도 각각 별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농협납품지정업체 운용기준에 2년에 1회 의무적으로 교

육을 필 하도록 한 후로 3년차이다. 정부 보조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교육은 업체도 모두 필요함을 인정했기에 농협을 통해 농림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그런데 단체별로 강사도 다르고 교재 또한 다르게 실시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에서 실

시하는 교육이 단체별로 정보를 차단시킨다면 동일 업종의 교육을 통해 편 가르기를 정부다 앞장서는 것 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꼭 분리를 해야 한다면 시간도 공정하게 해 주어야 하며 정보는 공유 할 수 있도록 교재

만이라도 같이 묶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도

6월 30일 마감

분기마다 실시하는 친환경유기농자재 검토 신청서 제출이 6월 30일자로 1차 마감되었다. 지난 3월 28일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요령이 고시도니 이후 첫 번째이다. 처음 발표된 자재의 종류별 구비서류 중 항생물질분석 성적서와 효과 시험 성적서에 대한 문제 때문에 퇴비의 경우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였다. 항생물질 분석은 분석기관과 검사 기준이 없어 우왕좌왕하다가 뒤늦게 농협축산사료연구소에서 5개 계열의 물질을 검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효과시험 성적서는 진흥청산하 기관이나 농

과 계열대학에서 발급하는 성적서에 한 한다고 하였으나 작물별 효과시험의 경우 시험기간이 제일 짧은 상추의 경우도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그 경비도 수백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몇몇 대학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밝혀져 효과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찾느라 부산을 떨어야 했다. 강원대학교와 충남대학교를 연결

하여 단체계약을 준비하는 등 회원사의 편의를 위해 준비를 하면서도 진흥청과는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연락을 하였다. 결국 효과시험성적서 때문에 처음 신청은 포기하고 있던 참에 진흥청 안인 과장으로부터 효과시험성적서는 필수 구비서류가 아닌 것으로 하고 간단한 비해 시험으로 대체하며 일차 신청 때는 추후 보완사항으로 한다는 연락을 받고 효과시험 외에 다른 구비서류가 준비된 몇몇 업체만 신청하게 되었다.

구비서류 중 효과시험 성적서는 필수기 아닌 선택 구비서류로이고

추후 별도의 기준에 의한 비해(肥害)시험 성적서로 보완 예정

자재의 종류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2부(원본 1, 사본 1)
토양개량용 자재	1. 원료의 특성, 조성비 및 물질유래에 관한 자료 2. 제조공정 등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3. 유해성분 분석 성적서
작물생육용 자재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시료(200g) 5. 효과시험성적서 6. 항생물질 분석 성적서(가축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자재)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7. 포장지 표기사항(유통될 자재의 포장지 내용) 8. 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9. 비료품목등록증 10. 세부정보 요약서